

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임만균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73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5월 26일

발 의 자: 임만균, 김성준, 김영철,
김원태, 남창진, 박승진,
박칠성, 봉양순, 송도호,
오금란, 유정희, 윤기섭,
이상욱, 이영실, 이용균,
이원형, 이종태, 임규호,
임종국, 전병주, 정준호,
허 훈, 황철규 의원(23명)

1. 제안이유

-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 외의 시설에서 보유동물 또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를 금지하고자 함
-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, 농업 임업피해, 재산상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금지함(안 제9조의3 신설)
- 나.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의4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,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3 및 제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3(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) 누구든지 「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전시하려는 야생동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가. 포유류 외 분류군 중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 및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은 야생동물로서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7조의4로 정하는 종나.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다.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양생물

2. 학술 연구·교육 등 공익적 목적으로서 시행규칙 제7조의5로 정하는 경우

제9조의4(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)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(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
2.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·임업 및 어업의 피해
3. 야생동물로 인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·지속적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로서 도심지나 주택가 등에서 발생하는 차량·건물·시설 등의 부식 또는 파손에 의한 피해

제13조제3항제1호 중 “유독물질”을 “인체급성유해성물질, 인체만성유해성물질, 생태유해성물질”로 한다.

제20조제2항 중 “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의2”를 “시행규칙 제7조의2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)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자가 전시 시설 소재지, 보유동물의 종, 개체수 등 현황을 명시하여 2023년 12월 13일까지 시장에게 신고한 보유동물의 경우에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〈신 설〉</u>	<u>제9조의3(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)</u> <u>누구든지 「동물원 및 수족관의</u> <u>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</u> <u>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</u> <u>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 있는</u> <u>야생동물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</u> <u>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</u> <u>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</u> <u>아니하다.</u> <u>1. 전시하려는 야생동물이 다음</u> <u>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</u> <u>경우</u> <u>가. 포유류 외 분류군 중 인수</u> <u>공통질병 전파 우려 및 사람</u> <u>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</u> <u>낮은 야생동물로서 「야생생</u> <u>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</u> <u>시행규칙」 (이하 “시행규칙”</u> <u>이라 한다) 제7조의4로 정</u> <u>하는 중</u> <u>나.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」</u> <u>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생</u> <u>물</u> <u>다.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</u> <u>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</u>

〈신 설〉

제13조(야생생물 보호구역에서의
행위제한 등) ①、② (생 략)

③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는 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
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

호에 따른 해양생물

2. 학술 연구、교육 등 공익적 목
적으로서 시행규칙 제7조의5로
정하는 경우

제9조의4(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
예방)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다
음 각 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
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
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
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(신
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
경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

2.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、임업
및 어업의 피해

3. 야생동물로 인하여 일정한 지
역에서 반복적、지속적으로 발
생한 재산상의 피해로서 도십지
나 주택가 등에서 발생하는 차
량、건물、시설 등의 부식 또는
파손에 의한 피해

제13조(야생생물 보호구역에서의
행위제한 등) ①、② (현행과 같
음)

③ -----

-----.

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
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
에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
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
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조에 따
른 특정수질유해물질, 「폐기물
관리법」 제2조에 따른 폐기물
또는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
조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
행위

2. ~ 4. (생 략)

제20조(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
물의 피해방지) ① (생 략)

② 제1항에 따른 인공구조물의
범위 및 설치기준은 「야생생물
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
칙」 제7조의2를 따른다.

-----.

1. -----

----- 인체
급성유해성물질, 인체만성유해
성물질, 생태유해성물질-----
--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
물의 피해방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시행규칙 제7조의2---

-----.

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의4(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)를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부서(정원도시국 자연생태과)에서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[참고] 2025년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

조항	사업명	예산액(천원)
제9조의4	야생동물 피해예방	200,000

※자료: 2025 서울시 예산서

※사업내용

- 위치 : 멧돼지 출현 가능성이 있는 산림 인접 자치구 등
- 규모 : 차단울타리 설치 및 보수, 포획틀 설치
- 사업기간 : 2025.1. ~ 12.
- 사업비 : 200,000천원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병준
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
추 계 분 석 관 김지혜

☎ 02-2180-7952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